

복수학위 운영 시행세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52조의 3에 의한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“복수학위”라 함은 본 대학교와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과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“교류대학”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을 말한다.

③ “교류대학학생”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교류대학 소속 재학생과 교류대학에서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류대학 소속 재학생을 말한다.(개정 2026. 7. 15.)

④ “교환학생”이라 함은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본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선발되어 양 대학의 동의를 얻은 교류학생에게 적용된다.

제2장 교환학생의 교류대학 수학

제4조 (수학기간 및 신분)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복수학위협정에 의거한다.

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.

제5조 (대상) 복수학위협정이 체결된 해당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, 교환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수강신청 및 이수 교과목) ① 수강신청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규정 제26조를 적용하되, 학술교류협정 체결시 약정한 내용에 따른다.

② 수강이수교과목은 교류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양 대학의 해당학과(부) 교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③ 기타 이수 교과목은 양 대학과의 약정에 따른다.

제7조 (학위수여) 복수학위 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.

2. 교류대학에서 협정서에 명시된 최소학점이상 70학점이하 취득한 자.

제8조 (학점인정) ①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 당 소속 학과(전공)의 연간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점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전공, 교양, 일반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.

제3장 교류대학 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

제9조 (지원자격)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제10조 (수강신청 및 학점취득) ①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②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③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.

제11조 (학위수여) 본 대학교 재학 교류대학 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협정서에 명시된 최소학점 이상 취득하고, 소속 “교류대학”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“제1호 서식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

제4장 교류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

제12조 (운영 및 학위수여) ① 교류대학에서 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모집과 수학허가, 수학기간과 재학등록, 수강신청과 학점인정 등의 학위 이수 절차는 양국의 관련 법령과 협정서에 따라 운영한다.

② 해당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는 본 대학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협정서에 명시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“제1호 서식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(신설 2026. 7. 15.)

제5장 보칙

제13조 (준용규정) ①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서에 의하여 복수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국문 학위증

제 호

학 위 증

성 명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
학사학위를 수여함.

전 공 ○○○○ ○○○○학사
○○○○ ○○○○학사

부전공 ○○○○

년 월 일

성신여자대학교 총장 ○○박사 ○ ○ ○ (직인)

학위번호 : 성신여대 ○○○○학 ○○○○

영문 학위증

no:

Sungshin Women's University

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

hereby confers upon

(English name)

the degree of

Bachelor of ○ ○ ○ ○

in ○ ○ ○ ○

Bachelor of ○ ○ ○ ○

in ○ ○ ○ ○

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

given at Sungshin Women' s University, Korea

This (day) day of (month), (year)

(Signature)

(English name)

President of the University

Degree no.: SSWU ○○○○(B) ○○○○

<별지 제1호 서식_영문학위증> 삭제(2023.12.20.)